

교직원 청렴주의보 발령(1차)

(감사실 / 2022. 1. 24.)

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2022년 설 명절을 맞아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점검하고 부패·청렴 위해요소를 사전에 주의·당부함으로써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렴주의보를 발령합니다

□ 발령기간: 2022.1.25.(화)~2.4.(금)

□ 주요내용

🔥 직무관련자 향응 제공 또는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

- 직무 관련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 금품 등 제공 또는 약속 금지
-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 금지
 - * “금품 등”에는 금전 뿐 아니라 음식물·주류·골프 등의 접대·향응 또는 교통·숙박 등의 편의 제공 포함
- 교직원 배우자 또는 직계 존·비속의 수수금지 금품 제공(약속) 금지

🔥 명절 기간 음주 운전 및 소란(폭력)행위 금지

-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음주 운전 및 폭력 행위 금지

🔥 (국내외)여행, 골프 등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주의

- 직무관련자와의 불필요한 사적인 접촉 제한

☞ “사적인 접촉” 예시

1.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, 식사 및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
(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)
2. 직무관련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행위

🔥 (기타) 공직기강 주의사항

-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청탁금지법 위반, 성범죄, 갑질 사례 발생
- 업무공백·해태 등 무책임 및 소극행정 발생
- 복무·보안위반 등 기강해이 및 재난, 사고예방 및 비상대응 소홀 사례
- 불요불급한 회식·모임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례

※ UST 행동강령 위반 상담 및 신고처 : 행동강령책임관 김익수 (042-865-2311)